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10. 이훈기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 9. 1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29회 국회(정기회)

- 제10차 전체회의(2025. 11.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차 전체회의(2025. 12. 1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이훈기의원)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한도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100분의 4로 상향하고,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명호)

-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의 상한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상향하되,
특히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로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분실 등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1항 등).

<u>설></u> ④ ~ ⑩ (생략)	<u>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u> ④ ~ ⑩ (현행과 같음)
---------------------------------------	--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한도를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요건]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만 14세 미만인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1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민감정보를 처리한 경우
4. 제24조제1항·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경우
5. 제26조제4항에 따른 관리·감독 또는 교육을 소홀히 하여 수탁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제28조의5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처리한 경우
7. 제28조의8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9제1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국외 이전 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다만,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 및 비슷한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유 규모,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상품·용역의 가격 등 영업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 그런데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일부 기업은 여전히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0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단위: 건, 백만원)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9.말
건수	3	21	17	55	36	28
액수	6,775	8,248	101,833	23,206	61,197	165,857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근 주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 과징금 부과 현황]

일시	기업명	위반행위	부과액수
2025. 8. 27.	SKT	보호법 §29, §31①③, §34①	134,791백만원
2025. 7. 24.	Alibaba.com Singapore E-Commerce Private Limited	보호법 §28의8①, §28의8④, §31의2①, §38④	1,978백만원
2025. 5. 14.	테무 Whaleco	보호법 §28의8①, §26②④,	879백만원

		Technology Ltd.	§34의2①, §38④, §63①	
		Elementary Innovation Pte. Ltd.	보호법 §24의2①	490백만원
2025. 1. 22.	Apple Distribution International Limited		보호법 §26②, §28의8①	2,405백만원
2024. 5. 22.	카카오		舊 보호법 §29, §39의4①	15,141백만원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이에 개정안은 일반적인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4로 상향하고, 위반행위 중에서도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00분의 1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책임을 현저한 수준으로 높이고 결과적으로 기업 스스로 보안 시스템 강화 및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보임.
- 참고로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하여 EU의 경우 전체 매출액의 4%까지, 중국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의 5%까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경우 건당 최대 53,088달러¹⁾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징금 제도 관련 해외 사례]

(EU) 전체 매출액(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까지 부과 가능
 (중국) 전년도 매출액의 5%까지 부과 가능
 (FTC) 건당 최대 \$53,088(하루당 누적 부과). 동의의결·판결로 징벌적 수준 피해보상

1) 원화 기준 약 7,700만원(2025년 11월 기준)

※ 캘리포니아주 개인정보보호법(CCPA) : 정보보호당국의 행정처분, 주법무장관의 민사 벌금도 부과 가능(행정제재와 병과不)

유형	주체	금액
행정제재(과징금)	州정보보호당국	위반행위 당 \$2,500 / 아동 관련은 \$7,500
민사벌금	州법무부장관	금액은 위와 같음 (※행정제재와 병과不)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과징금 부과 상한 상향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23년 3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현행과 같이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상한이 매출액의 100분의 3으로 정해졌는데²⁾, 개정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개정안과 같이 이를 일률적으로 매출액의 100분의 4 수준까지 상향하고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과 관련된 안전조치 미이행 시 100분의 10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보호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기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는 기업 등 개인정보 보호에 현저히 소홀한 기업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강화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과징금 상향의 정도, 부과대상 범위 설정 등 제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2) 개인정보 관련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부과수준을 기존 5억원 이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다만,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은 제외)’으로 상향하고 그 대상도 개인정보처리자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제재 수준을 강화함.

하고,

아울러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기업의 예방적 투자 확대 등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하는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체계 강화도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참고로 보호위원회는 2025년 11월 현재 과징금을 상향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예방적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 중임.

- 또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킹은 기업의 보안 관리 미흡에서 비롯될 수도 있지만, 최신 공격기법이나 고도화된 해킹의 경우 기업의 사전 예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존재하는바,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과징금 상한을 설정할 경우 일종의 피해자이기도 한 기업에게 불합리한 규제가 될 수 있고,

대부분 기업의 이익률이 매출액의 10%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징금으로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부과할 경우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어 데이터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출하였음.

- 한편, 안 제64조의2제3항 단서 신설조항은 기존 제64조의2제1항 단서에 규정하던 내용을 제3항 단서로 옮기려는 것인데, 해당 내용을 제3항 단서 부분에 규정할 경우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

란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상한'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바,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체계상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부대의견

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강화한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실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에 활용하는 기금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